

목 차

증권발행조건 확정.....	1
----------------	---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1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 표 이 사 : 이정호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10-19
 (전 화) 042-719-8070
 (홈페이지) <http://www.rainbow-robot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부장 (성 명) 방승영
 (전 화) 042-719-8070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1월 27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65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6,500,000,000원
4.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적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 모집(매출)가액(예정): 7,000원 ~ 9,0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18,550,000,000원 ~ 23,850,000,000원	- 모집(매출)가액(예정): 10,0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26,500,000,000원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주3)	(주3)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주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주5)	(주5)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6)	(주6)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라.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주7)	(주7)
3. 기타위험- 바.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주8)	(주8)
IV. 인수인의 의견 (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주9)	(주9)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10)	(주10)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주11)	(주11)
2. 자금의 사용목적	(주12)	(주12)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2,650,000	500	7,000	18,55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1,325,000	9,275,000,000	420,343,000	총액인수
대표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1,325,000	9,275,000,000	343,917,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01.25 ~ 2021.01.26	2021.01.28	2021.01.25	2021.01.28	-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가. 평가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5)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1년 1월 25일 ~ 26일(2일간)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0년 08월 27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0년 11월 0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 총 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로서 행정주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에게 총 인수대가의 10%를 행정주관수수료로 지급하며 동 행정주관수수료를 제외한 인수대가에 대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비율대로 배분합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발행금액의 2.0% 이내 범위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는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미래에셋대우 (주)	기명식보통 주	39,750주	278,250,00 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 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대신증권(주)	기명식보통 주	39,750주	278,250,00 0원	
합계		79,500주	556,500,00 0원	

(주9)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생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0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9,5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부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12)	구 분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행사가능기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행사대상주식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권리행사가격	공모가격의 90%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환매청구권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2,650,000	500	10,000	26,50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1,325,000	13,250,000,000	900,735,000	총액인수
대표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1,325,000	13,250,000,000	736,965,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01.25 ~ 2021.01.26	2021.01.28	2021.01.25	2021.01.28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가. 평가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최종결정 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1년 1월 25일 ~ 26일**(2일간)

(주5)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2020년 08월 27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0년 11월 0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총 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6.0%(기본수수료 4.0%, 성과수수료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는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9)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미래에셋대우(주)	기명식보통주	39,750주	397,5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대신증권(주)	기명식보통주	39,750주	397,500,000원	
	합계		79,500주	795,000,0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생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9,5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부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12)

구 분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행사가능기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행사대상주식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권리행사가가격	공모가격의 90%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환매청구권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전략)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2,385,000주	9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265,000주	10.0%	우선배정
합계	2,650,00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우리사주조합	265,000주	10.0%	7,000원	1,855,000,000원	우선배정
일반투자자	530,000주	20.0%		3,710,000,000원	-

	~662,500주	~25.0%		~4,637,500,000원	
기관투자자	1,722,500주 ~1,855,000주	65.0% ~70.0%		12,057,500,000원 ~12,985,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650,000주	100.0%		18,550,000,000원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주1)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1,325,000주	50.0%	7,000원	9,275,000,000원
공동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주)	1,325,000주	50.0%		9,275,000,000원
합계		2,650,000주	100.0%		18,550,000,000원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265,000주 ~331,250주	50.0%	7,000원	1,855,000,000원 ~2,318,750,000원
공동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주)	265,000주 ~331,250주	50.0%		1,855,000,000원 ~2,318,750,000원
합계		530,000주 ~ 662,500주	100.0%		3,710,000,000원 ~4,637,500,000원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주4)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주5)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일에 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일에 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수요일에 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일에 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일에 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6)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서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

(주7) 이 5억원 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 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

-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 방법』 부분 참조)
-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주9)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0년 3월 19일)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동 규정 부칙 (2020.11.30)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기업공개에 대해서부터 적용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000원 ~ 9,000원

(주10)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주11)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부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행사가능기간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대상주식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주12) 권리행사가가격	공모가격의 90%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환매청구권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미래에셋대우(주)	39,750주	7,000원	278,250,000원	-
대신증권(주)	39,750주		278,250,000원	-
합계	79,500주		556,50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7,000~9,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전략)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2,385,000주	9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265,000주	10.0%	우선배정
합계	2,650,00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우리사주조합	265,000주	10.0%	10,000원	2,650,000,000원	우선배정
일반투자자	530,000주 ~662,500주	20.0% ~25.0%		5,300,000,000원 ~6,625,000,000원	-
기관투자자	1,722,500주 ~1,855,000주	65.0% ~70.0%		17,225,000,000원 ~18,55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650,000주	100.0%		26,500,000,000원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주1)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 액	금액
공동대표주관 회사	미래에셋대우(주)	1,325,000 주	50.0%	10,000원	13,250,000,000 원
공동대표주관 회사	대신증권(주)	1,325,000 주	50.0%		13,250,000,000 원
합계		2,650,000 주	100.0%		26,500,000,000 원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265,000주 ~331,250주	50.0%	10,000원	2,650,000,000 원 ~3,312,500,000 원
	공동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주) 265,000주 ~331,250주	50.0%		2,650,000,000 원 ~3,312,500,000 원
	합계	530,000 주 ~ 662,500 주	100.0%		5,300,000,000 원 ~6,625,000,000 원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주4)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주5)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일에 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일에 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수요일에 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일에 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일에 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주6)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서를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에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

(주7) 이 5억원 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

-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 방법』 부분 참조)
-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주9)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0년 3월 19일)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동 규정 부칙 (2020.11.30)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기업공개에 대해서부터 적용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

(주10) **으로**, 청약일 전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주11)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부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행사가능기간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대상주식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주12) 권리행사가가격	공모가격의 90%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2. 환매청구권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미래에셋대우(주)	39,750주	10,000원	397,500,000원	-
대신증권(주)	39,750주		397,500,000원	-
합계	79,500주		795,00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는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7,000원 ~ 9,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가. 평가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는 발행회사인 (주)레인보우로보틱스는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 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확정 공모가액	10,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1) 상기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범위는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3) **확정** 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가. 평가결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기재사항없음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증개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217	21	216	801	69	235	1,559
수량	378,696,000	38,689,000	379,757,000	1,432,276,000	107,907,000	426,420,000	2,763,745,000
경쟁률	204.1	20.9	204.7	772.1	58.2	229.9	1,489.9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증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은행, 보험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208	365,522,000	20	38,834,000	204	360,046,000	765	1,378,284,000	1	1,855,000	182	337,350,000	1,380	2,479,891,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4	3,900,000	1	1,855,000	9	14,146,000	6	7,748,000	0	0	4	5,571,000	24	33,220,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	-	-	-	-	-	-	-	-	-	-	-	-	-
밴드하단미만	-	-	-	-	-	-	-	-	-	-	-	-	-	-
미제시	5	9,274,000	-	-	3	5,565,000	30	46,244,000	68	106,052,000	49	83,499,000	155	250,634,000
합계	217	378,696,000	21	38,689,000	216	379,757,000	801	1,432,276,000	69	107,907,000	235	426,420,000	1,559	2,763,745,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비율(%)
12,000원 이상	330	588,110,000	21.3%

11,000원 이상 12,000원 미만	725	1,312,784,000	47.5%
10,000원 이상 11,000원 미만	319	572,647,000	20.7%
9,000원 초과 10,000원 미만	6	6,350,000	0.2%
9,000원	24	33,220,000	1.2%
9,000원 미만	-	-	0.0%
가격미제시	155	250,634,000	9.1%
합계	1,559	2,763,745,000	100.0%

주) 비율은 신청수량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6개월 확약	41	74,277,000
3개월 확약	98	176,415,000
1개월 확약	141	252,371,000
15일 확약	26	46,778,000
합계	306	549,841,000
총 참여건수 또는 신청수량 대비 비율(%)	19.6%	19.9%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의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주)레인보우로보틱스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대신증권(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주5)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2,650,000주
주당 모집가액	예정가액	7,000원 (주1)

또는 매출가액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8,550,00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1년 1월 25일(월)
		종료일	2021년 1월 25일(월)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1년 1월 25일(월)
		종료일	2021년 1월 26일(화)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1년 1월 25일(월)
		종료일	2021년 1월 26일(화)
청약 증거금(주4)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21년 1월 28일(목)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 (주1)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레인보우로보틱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레인보우로보틱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주2)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기일

- (주3)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주4)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 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 주권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 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월 28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권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권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취급처

(주5)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점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 본 · 지점 (이중청약 불가)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권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권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2,65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10,000원(주1)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26,500,00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21년 1월 25일(월)
		종료일	2021년 1월 25일(월)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1년 1월 25일(월)

		종료일	2021년 1월 26일(화)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1년 1월 25일(월)
		종료일	2021년 1월 26일(화)
청약 증거금(주4)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21년 1월 28일(목)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 (주1)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레인보우로보틱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레인보우로보틱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②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주2)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기일

- (주3)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증거금

-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 (주4)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 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1년 1월 28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 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월 28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취급처

- (주5)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정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대우(주) 본 · 지정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 본 · 지정 (이중청약 불가)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 (주6)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 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 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단위: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	인수금액	인수 조건
구분	명칭	주소			
공동대표주관 회사	미래에셋대우(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기명식 보통주 1,325,000주	9,275,000,000	총액인수
	대신증권(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기명식 보통주 1,325,000주	9,275,000,000	총액인수

- (주1)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금액인 7,0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 (주2)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원)

구분	인수인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주)	420,343,000	-
	대신증권(주)	343,917,000	-
	합계	764,260,000	-

- (주1) 총 인수대가는 총 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

수대가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로서 행정주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에게 총 인수대가의 10%를 행정주관수수료로 지급하며 동 행정주관수수료를 제외한 인수대가에 대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인수비율대로 배분합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발행금액의 2.0% 이내 범위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가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미래에셋대우(주)	기명식보통주	39,750주	278,25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대신증권(주)	기명식보통주	39,750주	278,250,000원	
합계		79,500주	556,500,000원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
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
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레인보우로보틱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000원 ~ 9,000원의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
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9,5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
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
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총액인수]

(단위: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인수금액	인수
-----	-------	------	----

구분	명칭	주소	종류 및 수량		조건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기명식 보통주 1,325,000주	13,250,000,000	총액인수
	대신증권(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기명식 보통주 1,325,000주	13,250,000,000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단위: 원)

구분	인수인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주)	900,735,000	-
	대신증권(주)	736,965,000	-
	합계	1,637,700,000	-

(주1) 총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총 발행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 포함)의 6.0%(기본수수료 4.0%, 성과수수료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가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하는 주식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주)	기명식보통주	39,750주	397,5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대신증권(주)	기명식보통주	39,750주	397,500,000원	
합계		79,500주	795,000,000원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
(주1) 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
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주2) 야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 및 대신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레인보우로보
틱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79,5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전>

라.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상장일로부터 1년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최대주주 오준호 등 특수관계인 6인은 1년의 추가적인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 후 주식수 15,584,500주 중 최대주주등 보유지분 9,464,375주(상장 후 2년), 상장주선인 의무보유분 79,500주(상장 후 3개월)는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 9,543,875주(61.24%)를 제외한 6,040,625주(38.7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각 주주들의 의무보유 종료 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관계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공모 후 주주명부		유통가능		유통불가능		의무보유 기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오준호	보통주	3,469,375	22.26%	-	-	3,469,375	22.26%	24개월(*2)
특수관계인	윤혜선	보통주	1,105,500	7.09%	-	-	1,105,500	7.09%	24개월(*2)
특수관계인	오수정	보통주	1,105,500	7.09%	-	-	1,105,500	7.09%	24개월(*2)
특수관계인	Erick Soohyung Oh	보통주	1,034,000	6.63%	-	-	1,034,000	6.63%	24개월(*2)
등기임원	이정호	보통주	1,430,000	9.18%	-	-	1,430,000	9.18%	24개월(*2)
등기임원	허정우	보통주	880,000	5.65%	-	-	880,000	5.65%	24개월(*2)
등기임원	임정수	보통주	440,000	2.82%	-	-	440,000	2.82%	24개월(*2)
상장주선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보통주	79,500	0.51%	-	-	79,500	0.51%	3개월(*3)
-	1%이상 소유주주	보통주	2,920,026	18.74%	2,920,026	18.74%	-	-	-
기타주주	1%미만 소액주주	보통주	470,599	3.02%	470,599	3.02%	-	-	-
공모주주	공모주식(신주모집)	보통주	2,650,000	17.00%	2,650,000	17.00%	-	-	-
합계			15,584,500	100.00%	6,040,625	38.76%	9,543,875	61.24%	-

(*1)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최대주주 등)에 따른 의무보유 1년(기술성장기업)+ 한국거래소와 협의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1년 연장

(*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의무보유 3개월

(*4) (주)큐더스벤처스 경우 RCPS 259,74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의2에 따라 의무보유 1개월이지만 상장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기재하지 않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상장 후 의무보유)

② 제1항 및 제38조의2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장 후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의 이행, 인수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기간동안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상장 후 의무보유)

③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력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경영인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경우
4.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79,500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미래에셋대우(주)	보통주	39,750 주	278,250,000 원	상장 후 3개월
대신증권(주)	보통주	39,750 주	278,250,000 원	상장 후 3개월

주1) 위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7,000원~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입니다

주2)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그리고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주식수까지 포함시 상장 주식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040,625주는 상장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8.76%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라.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상장일로부터 1년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최대주주 오준호 등 특수관계인 6인은 1년의 추가적인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 후 주식수 15,584,500주 중 최대주주등 보유지분 9,464,375주(상장 후 2년), 상장주선인 의무보유분 79,500주(상장 후 3개월)는 매각이 제한되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 9,543,875주(61.24%)를 제외한 6,040,625주(38.76%)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각 주주들의 의무보유 종료 시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관계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공모 후 주주명부		유통가능		유통불가능		의무보유 기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오준호	보통주	3,469,375	22.26%	-	-	3,469,375	22.26%	24개월(*2)
특수관계인	윤혜선	보통주	1,105,500	7.09%	-	-	1,105,500	7.09%	24개월(*2)
특수관계인	오수정	보통주	1,105,500	7.09%	-	-	1,105,500	7.09%	24개월(*2)
특수관계인	Erick Soohyung Oh	보통주	1,034,000	6.63%	-	-	1,034,000	6.63%	24개월(*2)
등기임원	이정호	보통주	1,430,000	9.18%	-	-	1,430,000	9.18%	24개월(*2)
등기임원	허정우	보통주	880,000	5.65%	-	-	880,000	5.65%	24개월(*2)
등기임원	임정수	보통주	440,000	2.82%	-	-	440,000	2.82%	24개월(*2)
상장주선인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보통주	79,500	0.51%	-	-	79,500	0.51%	3개월(*3)
-	1%이상 소유주주	보통주	2,920,026	18.74%	2,920,026	18.74%	-	-	-
기타주주	1%미만 소액주주	보통주	470,599	3.02%	470,599	3.02%	-	-	-
공모주주	공모주식(신주모집)	보통주	2,650,000	17.00%	2,650,000	17.00%	-	-	-
합계			15,584,500	100.00%	6,040,625	38.76%	9,543,875	61.24%	-

(*1)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최대주주 등)에 따른 의무보유 1년(기술성장기업)+ 한국거래소와 협의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1년 연장

(*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의무보유 3개월

(*4) (주)큐더스벤처스 경우 RCPS 259,74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1의2에 따라 의무보유 1개월이지만 상장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기재하지 않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 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상장 후 의무보유)

② 제1항 및 제38조의2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장 후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의 이행, 인수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기간동안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상장 후 의무보유)

③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력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경영인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경우
4.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는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79,500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미래에셋대우(주)	보통주	39,750 주	397,500,000원	상장 후 3개월
대신증권(주)	보통주	39,750 주	397,500,000원	상장 후 3개월

주1) 위 취득금액은 공모**확정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그리고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주식수까지 포함시 상장 주식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040,625주는 상장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8.76%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마.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정관 제9조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에게 265,000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환우선주(CPS)가 259,740 주 발행되어 있으며 상장이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제2항9호에 따라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이 아래와 같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 현황]

구분	내용	
부여 대상	미래에셋대우(주)	대신증권(주)
부여 주식수	145,750 주	119,250 주
부여 주식종류	보통주	
행사가격	확정공모가액	
행사기간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당사가 부여한 신주인수권 등 희석가능 주식수를 포함한 전체 지분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석가능 주식수 포함 전체 주식수]

구분	주식수	행사 및 전환 후
보통주 주식수	12,855,000 주	12,855,000 주
공모주식수	2,650,000 주	2,650,000 주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	79,500 주	79,500 주

전환우선주식	259,740 주	408,162 주
상장주선인 신주인수권	-	265,000 주
합 계	15,844,240주	16,257,662 주

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공모희망가액 7,000원 ~ 9,000원 중 하단기준인 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에 있어서 당사의 총 희석가능한 주식수는 전환우선주 408,162주(전환우선주 259,740주의 공모가 Band 하단기준 7,000원*70%=4,900원 기준으로 Refixing 적용시 후 보통주 전환),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추가 발행 될 수 있는 주식 265,000주로 총 673,162주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과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주가가 희석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의 공모희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희석가능 주식수를 포함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 및 전환 조건]

구분	내 용
전환우선주 발행 주식수	259,740 주
전환가액(원/주)	7,700
총발행금액(원)	1,999,998,000
발행일자	2020년 07월 01일
배당에 관한 사항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
존속기한	발행일로부터 5년
전환권 청구기간	발행일 익일 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환가격 조정	당사의 IPO 시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공모가격의 70%로 조정 회사가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
공모가 기준 전환권 조정가격(원/주)	4,900
공모가기준 가격 조정반영 보통주 전환 후 주식수	408,162 주

[공모 후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주)

구분	주주명	공모 전		공모 후		공모 후 (희석주식수 반영 시)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등	오준호 외 6인	9,464,375	73.62%	9,464,375	60.73%	9,464,375	58.22%
1%이상 소유주주		2,920,026	22.72%	2,920,026	18.74%	2,920,026	17.96%
소액주주		470,599	3.66%	470,599	3.02%	470,599	2.89%
공모주주		-	-	2,650,000	17.00%	2,650,000	16.3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	79,500	0.51%	79,500	0.49%
전환우선주	-	-	-	-	408,162	2.51%
상장주선인 신주인수권	-	-	-	-	265,000	1.63%
합 계	12,855,000	100.00%	15,584,500	100.00%	16,257,662	100.00%

- 주1) '5%이상 소유주주/1%이상 소유주주/소액주주' 여부는 '공모 후(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지분율'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2)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공모희망가액 7,000원 ~ 9,000원 중 하단기준인 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주식수에는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 될 수 있는 주식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장 이후 전환우선주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수에는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 265,0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장 이후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들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마. 전환우선주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정관 제9조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대신증권에게 265,000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환우선주(CPS)가 259,740 주 발행되어 있으며 상장이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9호에 따라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이 아래와 같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 현황]

구분	내용	
부여 대상	미래에셋대우(주)	대신증권(주)
부여 주식수	145,750 주	119,250 주
부여 주식종류	보통주	
행사가격	확정공모가액	
행사기간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당사가 부여한 신주인수권 등 희석가능 주식수를 포함한 전체 지분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회석가능 주식수 포함 전체 주식수]

구분	주식수	행사 및 전환 후
보통주 주식수	12,855,000 주	12,855,000 주
공모주식수	2,650,000 주	2,650,000 주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	79,500 주	79,500 주
전환우선주식	259,740 주	285,714 주
상장주선인 신주인수권	-	265,000 주
합 계	15,844,240주	16,135,214 주

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공모확정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에 있어서 당사의 총 회석가능한 주식수는 전환우선주 **285,714주**(전환우선주 259,740주의 공모가 **확정가격기준 10,000원*70%=7,000원** 기준으로 Refixing 적용시 후 보통주 전환),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추가 발행 될 수 있는 주식 265,000주로 총 673,162주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과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주가가 회석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의 공모희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회석가능 주식수를 포함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 및 전환 조건]

구분	내 용
전환우선주 발행 주식수	259,740 주
전환가액(원/주)	7,700
총발행금액(원)	1,999,998,000
발행일자	2020년 07월 01일
배당에 관한 사항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
존속기한	발행일로부터 5년
전환권 청구기간	발행일 익일 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환가격 조정	당사의 IPO 시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공모가격의 70%로 조정 회사가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
공모가 기준 전환권 조정가격(원/주)	7,000원
공모가 기준 가격 조정반영 보통주 전환 후 주식수	285,714주

[공모 후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주)

구분	주주명	공모 전		공모 후		공모 후 (희석주식수 반영 시)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등	오준호 외 6인	9,464,375	73.62%	9,464,375	60.73%	9,464,375	58.66%
1%이상 소유주주		2,920,026	22.72%	2,920,026	18.74%	2,920,026	18.10%
소액주주		470,599	3.66%	470,599	3.02%	470,599	2.92%
공모주주		-	-	2,650,000	17.00%	2,650,000	16.42%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	-	79,500	0.51%	79,500	0.49%
전환우선주		-	-	-	-	285,714	1.77%
상장주선인 신주인수권		-	-	-	-	265,000	1.64%
합 계		12,855,000	100.00%	15,584,500	100.00%	16,135,214	100.00%

- 주1) '5%이상 소유주주/1%이상 소유주주/소액주주' 여부는 '공모 후(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지분율'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2)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공모확정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주식수에는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 될 수 있는 주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장 이후 전환우선주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수에는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 265,0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장 이후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들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은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7,000원 ~ 9,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가. 평가결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은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확정 공모가액	10,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0)

<정정 전>

(나)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레인보우로보틱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13,185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주2)	46.91% ~ 31.74%

공모희망가액 밴드	7,000 원 ~ 9,000 원
확정 공모가액 (주1)	-

(주1)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2)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금번 공모 투자자 수익률, COVID-19 전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증시 변동 위험성,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희망공모가액	희망공모가액
		하단	상단
이노테라피	2019.02.01	44.70%	31.00%
셀리드	2019.02.20	43.50%	29.90%
지노믹트리	2019.03.27	53.10%	31.10%
아모그린텍	2019.03.29	20.00%	10.00%
수젠텍	2019.05.28	53.40%	45.70%
마이크로디지털	2019.06.05	55.10%	48.40%
압타바이오	2019.06.12	40.60%	29.30%
폴리토	2019.07.17	34.70%	20.90%
나노브릭	2019.08.19	40.90%	27.80%
라닉스	2019.09.18	36.20%	16.30%
올리패스	2019.09.20	44.10%	32.00%
엔바이오니아	2019.10.24	35.90%	19.50%
캐리소프트	2019.10.29	45.00%	29.30%
미디어젠	2019.11.05	20.30%	10.10%
라파스	2019.11.11	40.20%	27.70%
티움바이오	2019.11.22	43.60%	29.50%
제이엘케이인스펙션	2019.12.11	28.90%	6.30%
신테카바이오	2019.12.17	40.10%	24.10%
메드팩토	2019.12.19	40.50%	24.80%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019.12.20	34.70%	25.40%
천랩	2019.12.26	42.60%	28.90%
서남	2020.02.20	33.00%	23.10%
레몬	2020.02.28	35.40%	25.00%
서울바이오시스	2020.03.06	41.60%	32.60%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28.60%	13.30%
젠큐릭스	2020.06.25	44.40%	36.00%
소마젠	2020.07.13	42.70%	21.90%
솔트룩스	2020.07.23	35.00%	18.80%

제놀루션	2020.07.24	39.10%	29.00%
셀레믹스	2020.08.21	47.50%	34.70%
이오플로우	2020.09.14	36.60%	26.00%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47.70%	34.60%
박셀바이오	2020.09.22	42.90%	33.30%
넥스틴	2020.10.08	32.40%	17.10%
피플바이오	2020.10.19	43.00%	31.60%
미코바이오메드	2020.10.22	36.40%	20.50%
바이브컴퍼니	2020.10.28	21.36%	4.27%
센코	2020.10.29	40.74%	22.97%
고바이오랩	2020.11.18	43.65%	28.00%
평균		39.23%	25.66%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은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6.91% ~ 31.7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7,000원 ~ 9,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0년말을 기준으로 현재가치 환산한 실적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실적이 동사의 2020년 실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2023년 실적이 예상보다 하락할 경우 동사 공모가액이 실적 하락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나)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레인보우로보틱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13,185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주2)	46.91% ~ 31.74%
공모희망가액 밴드	7,000 원 ~ 9,000 원
확정 공모가액 (주1)	10,000원

(주1)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0,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2)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금번 공모 투자자 수익률, COVID-19 전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증시 변동 위험성, 과거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희망공모가액	희망공모가액
		하단	상단
이노테라피	2019.02.01	44.70%	31.00%
셀리드	2019.02.20	43.50%	29.90%
지노믹트리	2019.03.27	53.10%	31.10%
아모그린텍	2019.03.29	20.00%	10.00%
수젠텍	2019.05.28	53.40%	45.70%
마이크로디지털	2019.06.05	55.10%	48.40%
압타바이오	2019.06.12	40.60%	29.30%
플리토	2019.07.17	34.70%	20.90%
나노브릭	2019.08.19	40.90%	27.80%
라닉스	2019.09.18	36.20%	16.30%
올리패스	2019.09.20	44.10%	32.00%
엔바이오니아	2019.10.24	35.90%	19.50%
캐리소프트	2019.10.29	45.00%	29.30%
미디어젠	2019.11.05	20.30%	10.10%
라파스	2019.11.11	40.20%	27.70%
티움바이오	2019.11.22	43.60%	29.50%
제이엘케이인스펙션	2019.12.11	28.90%	6.30%
신테카바이오	2019.12.17	40.10%	24.10%
메드팩토	2019.12.19	40.50%	24.80%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019.12.20	34.70%	25.40%
천랩	2019.12.26	42.60%	28.90%
서남	2020.02.20	33.00%	23.10%
레몬	2020.02.28	35.40%	25.00%
서울바이오시스	2020.03.06	41.60%	32.60%
에스씨엠생명과학	2020.06.17	28.60%	13.30%
젠큐릭스	2020.06.25	44.40%	36.00%
소마젠	2020.07.13	42.70%	21.90%
솔트룩스	2020.07.23	35.00%	18.80%
제놀루션	2020.07.24	39.10%	29.00%
셀레믹스	2020.08.21	47.50%	34.70%
이오플로우	2020.09.14	36.60%	26.00%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47.70%	34.60%
박셀바이오	2020.09.22	42.90%	33.30%
넥스틴	2020.10.08	32.40%	17.10%
피플바이오	2020.10.19	43.00%	31.60%
미코바이오메드	2020.10.22	36.40%	20.50%
바이브컴퍼니	2020.10.28	21.36%	4.27%
센코	2020.10.29	40.74%	22.97%
고바이오랩	2020.11.18	43.65%	28.00%
평균		39.23%	25.66%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은 (주)레인보우로보틱스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6.91% ~ 31.7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7,000원 ~ 9,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0년말을 기준으로 현재가치 환산한 실적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실적이 동사의 2020년 실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2023년 실적이 예상보다 하락할 경우 동사 공모가액이 실적 하락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대신증권(주)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1. 모집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 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	금 액
총 공모금액	19,106,500,000
신주 모집금액(1)	18,55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556,500,000
발행제비용(3)	970,810,800
순수입금 [(1)+(2)-(3)]	18,135,689,200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인수수수수료	764,260,000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4.0%
등록세	5,459,0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1,091,800	등록세의 20.0%
기타비용	200,000,000	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	970,810,800	-

주1) 인수수수수료 등 상기 발행제비용은 제시 희망공모금액인 7,0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1. 모집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 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	금 액
총 공모금액	26,500,000,000
신주 모집금액(1)	26,5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795,000,000
발행제비용(3)	1,844,250,800
순수입금 [(1)+(2)-(3)]	25,450,749,2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금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인수수수수료	1,637,700,000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6.0%(성과수수료 포함)
등록세	5,459,0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1,091,800	등록세의 20.0%
기타비용	200,000,000	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	1,844,250,800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기 발행제비용은 **확정 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12)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기준일 : 2020년 11월 27일)

(단위 : 천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계
7,160,000	-	3,975,689	-	-	7,000,000	18,135,689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7,0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2) 가. 자금 사용 세부계획에서 (2) 연구개발비는 기타에 작성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1) 시설자금

당사는 협동 로봇 및 서비스 로봇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자동화 생산시설을 확충할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시설 자금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내역	2021년	2022년	합계	비고
토지	공장부지매입 참조(a)	2,000,000		2,000,000	계약 및 중도금
		500,000		500,000	잔금
	소계	2,500,000	-	2,500,000	
건물	계약 및 중도금	1,000,000	1,500,000	2,500,000	
	잔금	1,000,000		1,000,000	
	소계	2,000,000	1,500,000	3,500,000	
기계장치	CNC밀링 기계류	240,000		240,000	협동로봇, 모바일플랫폼
	CNC선반 기계류	200,000		200,000	
	레이저마킹기 기계류	60,000		60,000	
	소계	500,000	-	500,000	
차량운반구	1600cc차량	16,000		16,000	아반떼, K3, SM3등
	1600cc차량	16,000		16,000	아반떼, K3, SM3등
	1600cc차량	16,000		16,000	아반떼, K3, SM3등
	1000cc차량	12,000		12,000	모닝, 스파크 등

	소계	60,000	-	60,000	
공구와기구	금형류	500,000		500,000	
	CNC밀링_가공물	30,000		30,000	
	CNC선반_가공물	20,000		20,000	
	소계	550,000	-	550,000	
비품	가구등	50,000		50,000	
	소계	50,000	-	50,000	
총합계		5,660,000	1,500,000	7,160,000	

(a)공장부지매입부지

당사는 현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지 10-19(문지동)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부지는 현재 본사에서 관리가 용이한 지역인 대전 또는 세종 산업단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설되는 제조소에서는 협동로봇 2000대, 이족보행로봇 10대, 사족보행로봇 30대, 음료로봇 200대, 재난현장 구조로봇 50대, 정밀지향마운트류 3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Capa를 갖춘 제조소 및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약 6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연구개발자금

당사의 로봇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부품개발과 이족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 제품의 표준화를 위한 핵심 부품 모듈화 개발 및 제품의 다양성을 위한 내부과제인 SLAM/Navigation 기술 개발 과 3D 얼굴 재구성 시스템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자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시 기
이족보행연구	동적이족보행안정성 향상	3,000,000	2021년~2023년
SLAM/Navigation 기술 개발	실내 천장 기반 고속 SLAM/Navigation 시스템 개발	1,500,000	2021년~2023년
3D 얼굴 재구성 시 스템 개발	정밀 3차원 얼굴 인식 및 모델 생성 스 캐너 시스템 개발	2,500,000	2021년~2023년
합계		7,000,000	-

(3)운영자금

로봇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일부 확충하는 한편 생산 및 영업등 매출의 증가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지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사용시기
원재료 확보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재고자산 비축	1,000,000	2021년
인력 총원(a)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부서별 인력총원	2,475,689	2021년~2023년
해외지점의 활성화(b)	지점 시설, 인원 확충	500,000	2021년
합계		3,975,689	-

(a) 인력총원

당사는 분석기준일 현재 4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약 34명의 신규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분야는 연구/지원/생산/영업등 으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b)해외지점의 활성화

동사는 LasVegas가 Food&Beverage 사업의 시범운영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지점의 형태로 진출하였으며, 분석일 현재 미국지점은 1명의 지점장과 1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UNLV(네바다주립대학교)에 당사의 서비스로봇이 납품되어 있고, LasVegas 호텔 및 대학교 영업을 위하여 파견되어 있는 임직원 2명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기타 비용 등 운영비로 2021년에 약 5억원 이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기준일 : 2021년 1월 21일)

(단위 : 천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계
7,160,000	-	11,290,749	-	-	7,000,000	25,450,749

주1) 상기 금액은**확정공모금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주2) 가. 자금 사용 세부계획에서 (2) 연구개발비는 기타에 작성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1) 시설자금

당사는 협동 로봇 및 서비스 로봇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자동화 생산시설을 확충할계획이

며 이를 통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시설 자금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내역	2021년	2022년	합계	비고
토지	공장부지매입 참조(a)	2,000,000		2,000,000	계약 및 중도금
		500,000		500,000	잔금
	소계	2,500,000	-	2,500,000	
건물	계약 및 중도금	1,000,000	1,500,000	2,500,000	
	잔금	1,000,000		1,000,000	
	소계	2,000,000	1,500,000	3,500,000	
기계장치	CNC밀링 기계류	240,000		240,000	협동로봇, 모바일플랫폼
	CNC선반 기계류	200,000		200,000	
	레이저마킹기 기계류	60,000		60,000	
	소계	500,000	-	500,000	
차량운반구	1600cc차량	16,000		16,000	아반떼, K3, SM3등
	1600cc차량	16,000		16,000	아반떼, K3, SM3등
	1600cc차량	16,000		16,000	아반떼, K3, SM3등
	1000cc차량	12,000		12,000	모닝, 스파크 등
	소계	60,000	-	60,000	
공구와기구	금형류	500,000		500,000	
	CNC밀링_가공틀	30,000		30,000	
	CNC선반_가공틀	20,000		20,000	
	소계	550,000	-	550,000	
비품	가구등	50,000		50,000	
	소계	50,000	-	50,000	
총합계		5,660,000	1,500,000	7,160,000	

(a)공장부지매입부지

당사는 현재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339번지 10-19(문지동)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부지는 현재 본사에서 관리가 용이한 지역인 대전 또는 세종 산업단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설되는 제조소에서는 협동로봇 2000대, 이족보행로봇 10대, 사족보행로봇 30대, 음료로봇 200대, 재난현장 구조로봇 50대, 정밀지향마운트류 3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Capa를 갖춘 제조소 및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약 6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연구개발자금

당사의 로봇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부품개발과 이족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 제품의 표준화를 위한 핵심 부품 모듈화 개발 및 제품의 다양성을 위한 내부과제인 SLAM/Navigation 기술 개발 과 3D 얼굴 재구성 시스템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자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시 기
이족보행연구	동적이족보행안정성 향상	3,000,000	2021년~2023년
SLAM/Navigation 기술 개발	실내 천장 기반 고속 SLAM/Navigation 시스템 개발	1,500,000	2021년~2023년
3D 얼굴 재구성 시 스템 개발	정밀 3차원 얼굴 인식 및 모델 생성 스 캐너 시스템 개발	2,500,000	2021년~2023년
합계		7,000,000	-

(3)운영자금

로봇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일부 확충하는 한편 생산 및 영업등 매출의 증가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지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사용시기
원재료 확보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재고자산 비축 등	8,315,060	2021년~2023년
인력 총원(a)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부서별 인력총 원	2,475,689	2021년~2023년
해외지점의 활성화(b)	지점 시설, 인원 확충	500,000	2021년
합계		11,290,749	-

(a) 인력총원

당사는 분석기준일 현재 4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약 34명의 신규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분야는 연구/지원/생산/영업등 으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b)해외지점의 활성화

당사는 LasVegas가 Food&Beverage 사업의 시범운영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지점의 형태로 진출하였으며, 분석일 현재 미국지점은 1명의 지점장과 1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UNLV(네바다주립대학교)에 당사의 서비스로봇이 납품되어 있고, LasVegas 호텔 및 대학교 영업을 위하여 파견되어 있는 임직원 2명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기타 비용 등 운영비로 2021년에 약 5억원 이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0년 12월 18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